

『2026년 용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』 공고

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발해 인증서 수여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「2026년 용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2026년 9월 1일

용 인 시 장

1. 신청요건

공고일 기준, 1년 이상 용인시에 주소(본사, 지점, 제2공장 등)를 두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

- **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** : 최근 12개월('25. 8. 1. ~ '26. 7. 31.)간 고용증가율이 5% 이상이고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
- **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** : 최근 12개월('25. 8. 1. ~ '26. 7. 31.)간 고용증가율이 5% 이상이고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

※ 고용증가요건 상세

- ▶ **심사적용** : '25. 7. 31. 대비 '26. 7. 31. 고용증가인원* 및 고용증가율** 비교
 - * 고용증가인원(C) = '26. 7. 31. 기준 고용 인원(B) - '25. 7. 31. 기준 고용 인원(A)
 - ** 고용증가율(%) = $C \div A \times 100(\%)$
- ▶ **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** :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¹⁾가 아닐 것

1) 단시간근로자 :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

2. 신청(선정) 제외 대상

- 국세 및 지방세, 4대보험 체납기업[공고일 현재]
-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[공고일 현재]
- 임금체불, 환경오염,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[공고일 기준 3년]
- 노동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형 처분을 받은 기업[공고일 기준 3년]
- 기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(사행성 사업 등)
- 신용정보업자 발급 신용평가 등급이 CCC+ 이하인 기업(공고일 현재)
- 2025년 용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(선정 시 2년간 인센티브 지원으로, 2년간 선정 제외)

3.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6. 9. 2.(화) ~ 2026. 9. 30.(수)
- 접수방법 : 전자우편(pjh0913@korea.kr) 또는 인터넷 접수
※ 용인기업지원시스템(<https://ybs.ypa.or.kr>) → 기업지원 → 지원사업 공고 → 신청서 작성
- 접 수 처 :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(문의 : ☎ 031-6193-3852)

4. 제출서류

- [서식1]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1부.
- [서식2]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기업 현황자료 1부.
- [서식3]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기업 직원명부 1부.
- [서식4]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결격사유 여부 확인서 1부.
- [서식5]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.
-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.
- 기업 신용평가서 1부.
-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각1부('25. 7. 31.일자 기준 / '26. 7. 31.일자 기준 각각 발급)

- 직원 복리후생 지원 증빙자료
- 기타 증빙자료(지역인재취업취약계층 채용,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)
 - *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자리를 *** 처리 또는 삭제 처리하여 제출
 - *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,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 - * 기타 증빙자료는 해당 기업만 제출

5. 심사기준 및 방법

- 심사방법 : 1차 - 서류심사
2차 - 현장 실사 후 최종평가 및 선정
- 심사기준 : 심사표에 의한 점수 산정

심사분야	배점	평가 항목
총점	100점	
경영 건전성	20점	· 기업 경영상태(20)
고용증대	50점	· 평균 고용증가인원(25), 평균 고용증가율(20), 청년 채용 실적(5)
고용환경 및 안정성	30점	· 복리후생 지원 등 근로환경(15) 정규직 채용 비율(10),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(5)

《 가점항목(10점) 》

- 최근 12개월간 용인시 지역인재 채용실적(5)
- 최근 12개월간 취업취약계층*(청년층 제외) 고용실적(5)
 - * 취업취약계층 : 저소득자, 고령자(55세 이상),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여성 등
(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적용)

- 선정방법 : 최종평가표의 고득점 순 선정

6. 선정 및 통보

- 선 정 : '26. 10월 말(예정)
- 결과통지 : 최종 선정 후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- 수 여 식 : '26. 11월 중(예정) ※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7. 인증기간 및 인센티브

- 인증기간 : 2년(2027년~2028년)
- 인센티브 : 2년(2027년~2028년 / 일부 1년)
- 인센티브 세부내용

연번	관련부서	세부 내용
1	일자리정책과	•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제작 · 수여 • 용인시 일자리박람회 등 채용행사 우선참여권 부여
2	청년정책과	• 청년일자리사업 등 기업 참여 일자리사업 가점 부여
3	민생경제과	• 용인시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료 면제(1년) ※ 기업별 2대 적용
4	기업지원과	•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우대 지원 및 특례보증 추천 시 가점부여 •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• 해외통상 분야 사업 추진 시 가점 부여 (국내·외 전시회 지원 사업, 해외시장 개척단 등) • 경력보유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가점 부여
5	교통정책과	•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(1년) ※ 기업별 2대 적용
6	세 정 과	•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(1년)

8. 기타 유의사항

- 신청서 등 제출서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.
-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,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- 신청(선정) 제외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청서 및 각종 증명(빙)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.
- 업체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일자리 정책과(☎031-6193-3852)로 문의 바람.

- 붙임 1. 심사항목 및 배점표 1부.
2. 신청서식 1부. 끝.